소송 등의 제기·신청(청구취지 변경)

1. 사건의 명칭	위약배상금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3. 변경된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취지(확장) :** 7,069,52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청구원인(기존과 동일)** 원고가 피고와의 지분참여계약 당시 풋옵션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 상 정해진 위약배상금을 청구함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있게 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20년 5월 26일
7. 확인일자	2020년 5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규 제소가 아닌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의 건